Kobe University Repository : Kernel

PDF issue: 2026-11-24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니와, 토오루
多胡, 太佑(翻訳)

(Citation)
高等教育無償化に係る法制と諸方策 : 前韓国教育行政学会会長／元大韓教育法学会会長コ ジョン教授の論考をもとにした対話
(Issue Date)
2022-07-30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Accepted Manuscript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9639

번역 : 윤태우(타고 타이스케)

과학연구비 재원 한일/일한 대화 기획②

고등교육 무상화에 관련한 법제와 방책들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니와 토오루（류코쿠대학 법학부）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들어가며 – 자기소개를 겸하여

전문 분야는 헌법・교육법. 특히 아동의 권리（인권）
현재, 류코쿠대학(교토) 법학부 교수　법학부 학장
　　일본교육법학회 사무국장
고등교육 무상화에 대한 관심은, 일본사립대학교직원노조에서 정책 제언 활동을 하면서.
　2017년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 법안(가) 작성에 관여함.

・앞선 대화 기획을 들은 약간의 감상
　인권 보장의 구체화가 운동을 통해 실현되어 온 한국과,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일본의 대비
　인권의 획득으로 나아가는 길의 차이?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일본국헌법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대한민국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거의 같은 조문

고등교육의 교육비 부담

낮은 공적 재원 부담률과 높은 사적 재원 부담률

이전에는 OECD국가 중 일본과 한국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띠는 국가였다.

현재, 일본은 제자리

한국은 공적 재원 부담 비율이 높아졌다

➡여러 입법 조치와 그것을 낳은 학생을 포함한 국민적 운동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

수익자 부담론에 따라 사비 부담을 정당화 해 온 일본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차세대에 대한 선행 투자라고 생각하지 못함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보고의 대상

헌법 26조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 그 외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생각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본국헌법의 해석론 전개를 다루고자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왜 고등교육 무상화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지에 대해여 헌법 해석을 중심으로 되짚어본다.

고등교육 무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인권 규약이 원용되고는 하는데, 일본의 헌법학에서 헌법 그 자체에 고등교육 무상화를 지향하는 규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낸다.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일본국헌법과 고등교육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초등・중등교육에 대한 기술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에 비해 고등교육, 사회교육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온 헌법서

고등교육, 특히 대학과 관련해서는 '학문의 자유'(23조)에서 언급하는 데 그친다.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일본국헌법과 고등교육

국가학회 편『신헌법의 연구』（1947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회적 또는 사회주의적 원리'에 바탕한 규정으로 본다.（미야자와 토시요시）

교육을 받을 권리도,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권력이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난센스다. "현실 사회에서 관련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실로 이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적극적인 책무를 부담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을 구체적화 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이다.（와가츠마 사카에）

고등교육기관을 전전 대학과 전문학교（넓게는 중등후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노다 요시유키）

⇒26조는 의무교육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 한 것이며 그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전후 직후라는 역사적 한계이기도 하다.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법학협회『주해 일본국헌법』（1953년）

헌법 26조는, 헌법 25조(소위 생존권)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교육을 받을 기회의 평등, “그 대상의 요청을 충족하는 수단인 의무 교육의 제도를 정한” 것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국가가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하여 배려해야 하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 권리로 파악한 것으로, 국가는 입법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단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교육이란 교육체계를 이루는 제도적 기관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대학을 포함함

“기회 균등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장학 의무를 짊” “대학에서 남자만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미야자와 토시요시『헌법〔신판〕』（1971년）**

“교육 받을 권리는 특히 고등교육에 관하여 의미가 있다”

“보통교육은 의무교육이고 게다가 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구태여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할 실익은 적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의무제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무상의 성격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데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동반된다. 과거 고등교육이 대체로 빈곤층과 연이 없던 것은 그 때문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이러한 사정에 주목하여,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는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소액으로 가능한 방법(육영제도 등)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등교육’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은, **그 뒤 학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좀처럼 계승되지 않았다.**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그 뒤 26조에 관한 기술

  ”아이들에 대해서 보장된다”（아시베 노부유시 『헌법』（1993년））

  26조의 중심은 의무교육 제도（츠지무라 미요코「헌법」（2000년））

  의무교육에 대한 기술에 그친다（타카하시 카즈유키『입헌주의와 일본국헌법」（2005년））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교육의 '무상'과 헌법
  26조 2항 하단의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수업료 무상설이 통설・판례
  　단, 교육법학에서는 취학 필수 비용 무상설이 유력

  현황　국공립학교는 수업료 무상　사립학교는 무상 대상외
  　　교과서는 입법 조치를 통해 무상인 상태

  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한 비판
  　국고 부담으로 하면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 관여가 강해짐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교육의 '무상'과 헌법

- 2010년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가 입법 과정을 통해 도입되었다（이후 부모 소득 제한）

- 대학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수학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어, 수업료 감면. 급부형 장학금 도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부모 소득 제한으로 매우 제한된 범위만 대상이 되고, 성적 조건과 기관 요건 등을 두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되었다는 점 등 문제점이 있다.

대학 수업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무상화와 일본국헌법

- 헌법학설이 고등교육에 대하여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지만, 학설이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고등교육이 교육 받을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고등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격차가 생기고 있다. 부모와 상관 없이 학생 개개인의 인권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새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비 부담이 무거운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립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수업료 뿐 아니라 교과서 비용, 생활비 등이 학생 생활을 보내는 데 필수적이다. 수업료 무상화가 당면 과제이겠지만, 장학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포함하여 헌법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앞으로도 검토하고자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